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통행속도 제한 및 교통안전시설
우선 설치〉

-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300호)
- 정동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274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 참고자료	15

I. 제안경위

가. 남인순의원안

1. 제 안 자 : 남인순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02. 20.
3. 회 부 일 : 2025. 02. 21.

나. 정동만의원안

1. 제 안 자 : 정동만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03. 21.
3. 회 부 일 : 2025. 03.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남인순의원안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신호기·안전표지·과속방지시설 및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장비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구역에서 속도 제한이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나 교통안전시설의 우선 설치 등을 규정하지 않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등 노인 및 장애인의 실질적인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교통안전시설의 우선적 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나. 정동만의원안

현행법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도시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등의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차마 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하더라도 이를 표시하기 위한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 시설·장비나 통행속도의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우선 설치 등의 근거가 미비하여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노인 또는 장애인이 실질적인 교통안전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표지, 횡단보도 신호기 등 교통안전 시설·장비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고(남인순의원안 제12조의2제4항),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교통안전시설의 우선적 설치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남인순의원안·정동만의원안 제12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남인순의원안	정동만의원안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① ----- ----- ----- ----- ----- ----- ----- ----- ----- ----- -----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 ----- -----제한· 금지하거나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④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

<u><신 설></u>	<u>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u> <u>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u> <u>1.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 시간의 연</u>	<u>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u> <u>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u> <u>1.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 기</u>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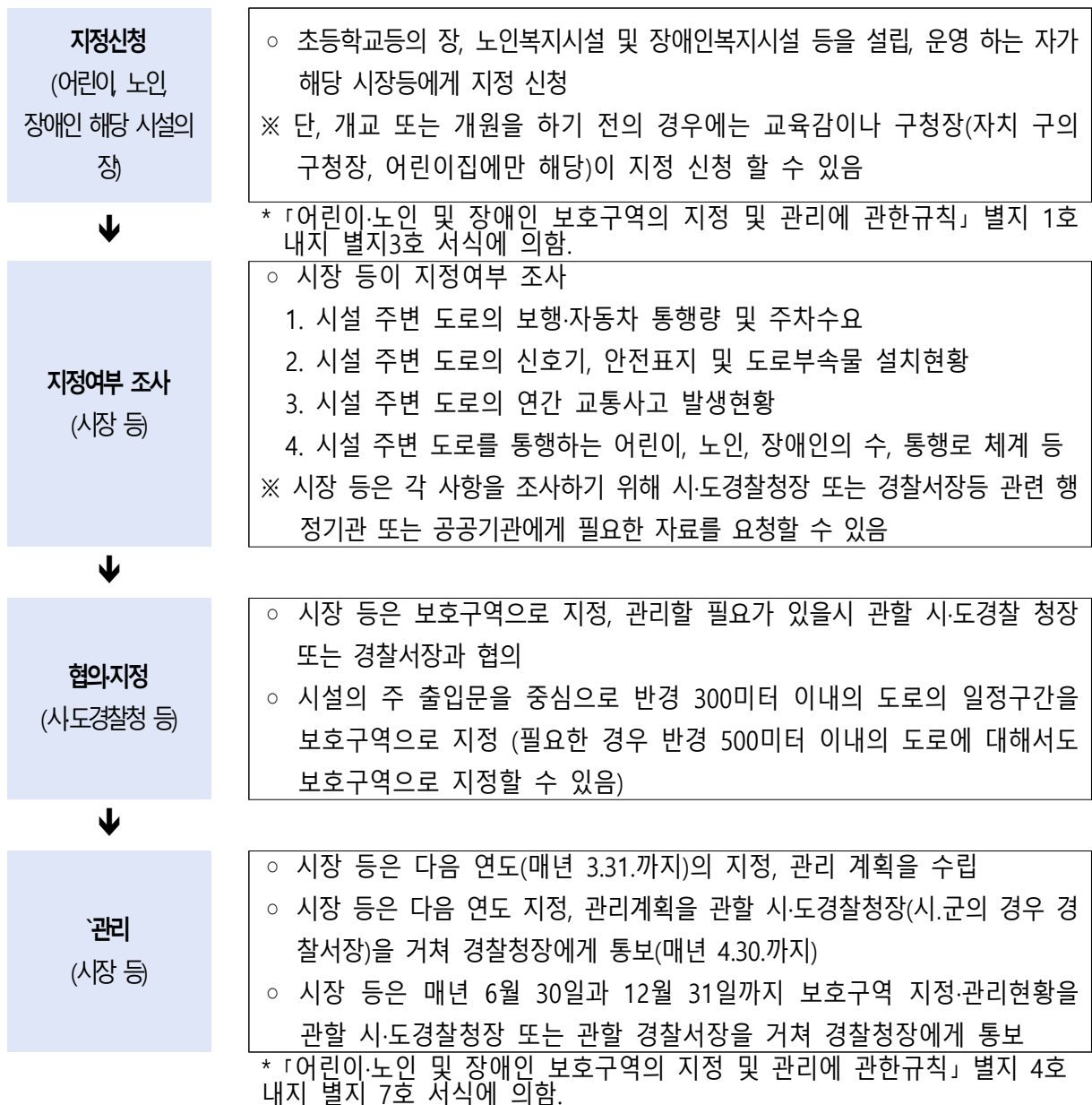
	<u>장이 가능한 신</u> <u>호기</u> 2. <u>속도 제한, 횡단</u> <u>보도, 기점(起點)</u> <u>및 종점(終點)에</u> <u>관한 안전표지</u> 3. 「도로법」 제2 <u>조제2호에 따른</u> <u>도로의 부속물</u> <u>중 과속방지시설</u> <u>및 차마의 미끄</u> <u>럼을 방지하기</u> <u>위한 시설</u> 4. <u>방호울타리</u> 5. <u>그 밖에 행정안</u> <u>전부, 보건복지부</u> <u>및 국토교통부의</u> <u>공동부령으로 정</u> <u>하는 시설 또는</u> <u>장비</u>	2. <u>속도 제한, 횡단</u> <u>보도, 기점(起點)</u> <u>및 종점(終點)에</u> <u>관한 안전표지</u> 3. 「도로법」 제2 <u>조제2호에 따른</u> <u>도로의 부속물</u> <u>중 과속방지시설</u> <u>및 차마의 미끄</u> <u>럼을 방지하기</u> <u>위한 시설</u> 4. <u>방호울타리</u> 5. <u>그 밖에 행정안</u> <u>전부, 보건복지부</u> <u>및 국토교통부의</u> <u>공동부령으로 정</u> <u>하는 시설 또는</u> <u>장비</u>
--	---	---

먼저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속도제한 및 무인교통단속
용 장비 설치 의무화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유치원, 초

등학교 등 어린이 관련 시설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으며,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교통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시 조치사항>



반면,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실버존) 및 장애인 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주변도로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동차등의 통행속도 제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교통안전시설의 우선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연구(2023)에 따르면, 보행자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충돌 속도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데,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일 때 보행자 치사율은 약 10% 수준이나, 시속 50킬로미터에서는 약 80%로 크게 높아짐. 특히 노인 보행자의 경우 같은 충돌 속도에서도 일반 성인보다 치사율이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감속 및 이를 담보할 무인교통단속 장비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노인 교통사고 통계>¹⁾

발생연도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2019	40,645	1,523	44,390
2020	35,312	1,342	38,147
2021	34,907	1,295	37,894
2022	35,914	1,258	39,192
2023	38,960	1,240	43,005
2024	40,208	1,299	44,564

※ 자료 : 경찰청

1) 장애인 교통사고 통계는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

다만, 어린이는 일정한 시간대에 정해진 동선을 따라 집단적으로 이동하는 반면, 노인 또는 장애인은 이동 경로와 시간대가 개별적으로 분산되는 특성이 있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일정 구간에 대한 고정적으로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경찰청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총 4,042개소(2024년 12월 기준)에 제한된 통행속도(30km/h)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하므로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따르면,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638억 300만원, 2031년 2,168억 3,8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6,703억 6,100만원(연평균 1,340억 7,2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계됨.

이에 대해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및 동 시행규칙²⁾에 따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위험지수 △사고 유형과 원인 △보도 분리 및 보행신호 등 보행 조건, △도로 구조와 통행속도 등 교통 여건 △민원 빈도 및 주민 의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6의2('23.7.4. 신설)

- (설치기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법규 위반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거나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곳에 설치하되, 위반행위의 유형과 나목에 따른 설치기준(교통사고 위험지수, 사고유형, 사고원인, 보행 조건, 도로 및 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로 평가해 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가 잦은 구간을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다고 설명함.³⁾

다음으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안전장비·시설 설치 의무화와 관련하여,

개정안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입법례와 같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에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 제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노인·장애인의 보행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법률에서 부과한 재정지출의 의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

나목 설치기준	평가 방법
1) 교통사고 위험지수	인명피해 사고 건수 및 사망자·중상자수
2) 사고 유형	차 대 차, 차 대 사람, 차량 단독 사고 건수
3) 사고 원인	속도위반,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건수
4) 보행 조건	가) 보도와 차도 구분 여부 나) 횡단보도 보행신호 설치 여부 다)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 여부
5) 도로 및 교통 여건	가) 과속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 여부 나) 도로구조상 운전자 시야 확보 유무 다) 도로폭, 차로수, 제한속도, 통행속도, 도로선형 등 도로 및 교통 여건에 따른 위험도
6) 그 밖의 기준	가) 교통법규 위반 발생 빈도 등 단속 필요성 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요구 민원의 빈도 다) 지역주민 여론 수렴 결과 라) 현장 여건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가능 여부 마) 이미 설치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유무 바) 그 밖의 교통사고 위험도 등

3) 경찰청은 실제로 위 설치기준에 따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노인 보호구역의 경우 2019년 34대에서 2024년 343대로 약 10배 증가하였으며, 장애인 보호구역 또한 같은 기간 5대에서 17대로 증가하는 바, 현행 기준으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함(참고자료 참조).

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장등은 보호구역 지정 자체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아울러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 설치와 관련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은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수립 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종류, 수량, 예산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장등이 필요한 재정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제5조),⁴⁾ 실효성 측면에서도 사고위험도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한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⁵⁾

4)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4월 30일까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을 거쳐, 시·군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별지 제4호서식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2. 노인 보호구역: 별지 제5호서식의 노인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3. 장애인 보호구역: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 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의 수
2.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3.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
4. 보호구역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5.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부속물의 종류별·도로관리청별 소요예산 총액 (유지·보수비용을 포함한다)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따른 재정 조치) 시장등은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①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3조제6항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 또는 장소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보행 신호등의 녹색신호시간은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3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이 조에서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6 II. 개별기준의 제133호·제324호 및 제536호의 안전표지
2. 노인 보호구역: 시행규칙 별표 6 II. 개별기준의 제323호 및 제536호의2의 안전표지
3. 장애인 보호구역: 시행규칙 별표 6 II. 개별기준의 제324호의2 및 제536호의3의 안전표지

제7조(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① 시장등은 보호구역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

따라서 법률에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현행과 같이 하위법령 체계 내에서 재정 여건과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동 개정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는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상당수가 이면도로 및 좁은 골목길에 위치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신호기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고, 부적절한 설치에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시설 설치를 강제하는 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통시설심의를 통해 적절한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5항제4호에서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란 다음 각 호의 도로부속물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
2. 도로반사경
3. 방호울타리
4. 그 밖에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③ 시장등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5.>

1. 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
2. 도로반사경
3. 과속방지시설
4. 미끄럼방지시설
5. 방호울타리
6. 그 밖에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문 의 처
02)6788-5344

[참고1] 보호구역 안전시설(보호구역 통합지침·표준정비모델)

교통안전시설	차량속도 저감시설	횡단·보행안전시설
- 시·종점 통합표지2 - 주·정차 금지표지 - 보호구역 표지 - 보호구역 노면표시 - 속도제한 노면표시	- 과속방지턱 - 차로폭 좁힘 - 교차로폭 좁힘 - 노면 요철포장 - 도로 적색포장 - 과속·신호위반 단속장비	- 고원식횡단보도 - 고원식교차로 - 보도 - 방호울타리 - 시선유도봉 - 볼라드

※ 자료: 경찰청

[참고2] 보호구역 지정 시 시설 개선 비용 : 개소당 약 1억원

*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사업별 지원단가 산출근거 참고

- 통합표지판 등 교통안전표지판(12개소) : 18백만원
- 노면표시(1개소) : 16백만원
- 과속방지턱(4개소) : 6백만원
- 미끄럼방지포장(3개소) : 30백만원
- 방호울타리(4개소) : 30백만원

※ 자료: 경찰청

[참고3] 신호기 설치 비용 : 개소당 약 5,000만원

- 1개소당 3,500만원 ~ 6,500만원
(교차로 형태 등 도로여건에 따라 설치 단가에 차이가 있음)

[참고4] 노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현황

(단위 : 개, %)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노인 보호구역 지정		2,673	3,194	3,679	4,042
교통시설	신호, 표지, 노면	53,236	59,013	63,979	68,170
도로부속	과방, 반사경, 등	11,403	15,943	14,482	15,906
보호구역 지정시설 설치 합계		64,639	74,956	78,461	84,076
증감 추계			15.96	4.67	7.1

[참고5] 장애인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운영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119	119	135	164
교통시설	신호, 표지, 노면	1,700	2,010	2,529	3,136
도로부속	과방, 반사경, 등	312	370	562	1,078
보호구역 지정시설 설치 합계		2,012	2,380	3,091	4,214
증감 추계			18.29	29.87	36.33

[참고6]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 운영 현황

(단위 : 건, %)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12월
운영(대)	870	1,379	4,525	8,423	11,256	12,810
증감(%)	-	58.5%	228.1%	86.1%	33.6%	+13.8%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 16,308개소('24.12월 기준)

[참고7] 노인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운영 현황

(단위 : 건, %)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12월
운영(대)	34	46	85	129	229	343
증감(%)	-	35%	85%	52%	78%	49.7%

※ 노인보호구역 지정현황 4,042개소('24.12월 기준)

[참고8] 장애인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운영 현황

(단위 : 건, %)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12월
운영(대)	5	4	4	8	10	17
증감(%)	-	-20%	0%	100%	25%	70%

※ 장애인보호구역 지정현황 164개소('24.12월 기준)

[참고9]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 내 단속장비 설치시 필요 예산(안)

- 단속장비 대당 설치 비용 : 약 2,500만원
- '24. 12월 기준, 단속장비가 없는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은 3,846개소로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약 961억원 설치비용 필요**